

2023. 5.

2022회계연도 순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순창군수

2022회계연도 순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등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 4. 13. ~ 5. 2.(20일간)

○ 검사위원

- ▶ 대표위원 : 손 종 석(순창군의회 의원)
- ▶ 검사위원 : 최 용 수(순창군의회 의원)
- ▶ 검사위원 : 우 만 식(전 공무원)
- ▶ 검사위원 : 최 면 식(전 공무원)
- ▶ 검사위원 : 김 진 규(전 농협지점장)
- ▶ 검사위원 : 김 해 란(전 농협지점장)

순창군 결산검사 위원 일동

# 목 차

<b>I. 결산검사 경과</b> .....	<b>2</b>
<b>II. 결산검사 총괄 현황</b> .....	<b>3</b>
1. 순창군 재정의 개황 .....	3
2. 세입.세출 결산 .....	6
3. 기금결산 .....	13
4. 재무제표의 결산 .....	14
5. 성과보고서 결산 .....	17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8
<b>III. 결산검사 결과</b> .....	<b>20</b>
1.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 .....	21
2. 우수 사례 .....	38

## 결산검사 의견서

순창군수 귀하

2023년 5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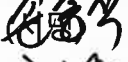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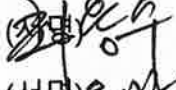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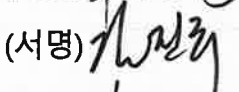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순창군의회로부터 순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4월 13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순창군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순창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순창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순창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손	종	석	
위	원	최	용	
위	원	우	만	식 (서명) 
위	원	최	면	식 (서명) 
위	원	김	진	규 (서명) 
위	원	김	해	란 (서명) 

#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3. 4. 13. ~ 5. 2.(2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손 종 석	▶ 결산검사 총괄	
위 원	최 용 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 공유재산, 성과보고서	
위 원	우 만 식		
위 원	최 면 식		
위 원	김 진 규	▶ 군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위 원	김 해 란	▶ 재무제표, 채권, 채무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결산검사장	4. 13.(목)	▶ 결산검사 개요 설명 ▶ 결산검사 제출자료 검토	
결산검사장	4. 14.(금)	▶ 결산검사(기획예산실)	
결산검사장	4. 17.(월) ~ 4. 19.(수)	▶ 결산검사(행정복지국)	
결산검사장	4. 20.(목) ~4. 24.(월)	▶ 결산검사(경제산업국)	
결산검사장	4. 25.(화)	▶ 결산검사(보건의료원)	
결산검사장	4. 26.(수) ~ 4. 27.(목)	▶ 결산검사(농업기술센터)	
결산검사장	4. 28.(금)	▶ 결산검사(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결산검사장	5. 1.(월)	▶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피드백 - 각 부서 지적사항 통보 및 의견 수렴	
결산검사장	5. 2.(화)	▶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및 검토 - 검사의견서 정리 및 마무리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순창군 재정의 개황

####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세입	462,442,939	522,271,279	532,757,297	567,882,990	646,656,916
	세출	336,596,683	405,696,407	435,510,240	458,122,486	501,100,757
	결산상잉여금	125,846,256	116,574,872	97,247,057	109,760,504	145,556,159
특별회계	세입	18,098,975	18,711,373	15,927,037	23,810,056	23,865,279
	세출	8,491,751	17,902,250	15,135,213	23,075,722	22,968,478
	결산상 잉여금	9,607,224	809,123	791,824	734,334	896,801
기금	수입	11,119,103	28,993,871	29,084,700	29,239,825	63,253,166
	지출	11,119,103	28,912,141	28,992,326	29,239,825	63,253,166
	결산상 잉여금	0	81,730	92,374	0	0
총 계	세입(수입)	491,661,017	569,976,523	577,769,034	620,932,871	733,775,361
	세출(지출)	356,207,537	452,510,798	479,637,779	510,438,033	587,322,401
	결산상 잉여금	135,453,480	117,465,725	98,131,255	110,494,838	146,452,960

순창군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세출을 주민수<sup>1)</sup>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 는 현년도에 21,974천원이다.

1) 2022년말 순창군 인구수 : 26,727명

순창군의 현년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2년	2,222,045	15,459	2,206,586	391,802	535,036	(143,234)	
2021년	2,067,389	13,691	2,053,698	378,360	454,750	(76,390)	
증감	154,656	1,768	152,888	13,442	80,286	(66,844)	

2022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52,888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66,844백만원 (87.5%) 감소하였다.

또한, 순창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순창군 채무는 2014년부터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여 현재까지 차입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재정건전성<sup>2)</sup>

### ○ 재정자립도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재정운영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정자립도는 총수익에서 자체조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 세외수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결산검사 시점에서 통합재정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금액을 활용하는 경우, 재정위험 판단지표 등은 결산검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의견서에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6.4%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수익과 보조금 수익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text{재정자립도} = 6.4\% \left[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 ○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는 순창군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데 활용된다. 순창군의 2022회계연도 재정자주도는 54.1%이다.

$$\text{재정자주도} = 54.1\% \left[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낙관적인 세수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2. 세입·세출 결산

### (1) 총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 = A-B)
<b>합 계</b>	<b>678,643,353</b>	<b>670,522,196</b>	<b>524,069,235</b>	<b>146,452,960</b>
일 반 회 계	654,734,070	646,656,916	501,100,757	145,556,159
특 별 회 계	23,909,283	23,865,279	22,968,478	896,801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b>합계</b>	<b>146,452,960 (2,390,000)</b>	<b>50,519,032 (2,390,000)</b>	<b>11,780,930</b>	<b>37,491,741</b>	<b>8,501,013</b>	<b>38,160,242</b>
일 반 회 계	145,556,159 (2,390,000)	50,348,890 (2,390,000)	11,780,930	37,491,741	8,471,981	37,462,615
특 별 회 계	896,801	170,141	0	0	29,031	697,627

※ ( )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고, 이월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70,522,196천원으로 예산액 678,643,353천원보다 8,121,157천원이 부족수납 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8.1%인 524,069,235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46,452,960천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50,519,032천원, 사고이월비 11,780,930천원 및 계속비 37,491,741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501,014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38,160,242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 잉여금은 146,452,960천원임이 확인된다.

## (2)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654,734,070	649,197,154	646,656,916	157,711	2,382,526
결산확인액	654,734,070	649,197,154	646,656,916	157,711	2,382,526
차 액	0	0	0	0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다음연도 이월액 (b-c-d)	예산액대비 징수결정비율 (b/a)	징수결정대비 수납비율 (c/b)	징수결정대비 결손비율 (d/b)
2021	569,855,693,710	570,954,021,826	567,882,990,416	773,397,190	2,297,634,220	100.19%	99.46%	0.13%
2022	654,734,070,670	649,197,154,186	646,656,916,636	157,711,410	2,382,526,140	99.15%	99.60%	0.02%
증감	61,079,236,960	54,013,651,656	54,963,870,176	△629,694,960				

#### 세입 결산 목별 결산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2년도 수납액	비율	2021년도 수납액	차액
합 계	646,656,916,636	100.0%	567,882,990,416	78,773,926,220
지방세	24,078,147,200	3.7%	21,300,326,190	2,777,821,010
세외수입	16,418,863,160	2.5%	16,967,423,382	△548,560,222
지방교부세	302,151,877,740	46.7%	207,361,902,330	94,789,975,410
조정교부금 등	17,399,142,000	2.7%	14,067,818,000	3,331,324,000
보조금	173,472,111,080	26.8%	190,077,167,870	△16,605,056,7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136,775,456	17.5%	118,108,352,644	△4,971,577,188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46,656,916,63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8,077,154,034원이 미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649,197,154,186원 대비 99.6% 수납하여, 미수납액 2,540,237,550원중 결손처분 157,711,4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82,526,140원으로 확인되었다.

세입 결산액 646,656,916,636원 중 지방세수입 24,078,147,200원(3.7%), 세외수입 16,418,863,160원(3%), 지방교부세 302,151,877,740원(46.7%), 조정교부금 등 17,399,142,000원(2.7%), 보조금 173,472,111,080원(2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136,775,456원(17.5%)로 자체수입보다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수납액과 비교하면, 지방세 2,777,821,010원, 지방교부세 94,789,975,410원, 조정교부금 등 3,331,324,000원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입금 결손처분

(단위 : 원)

구분	계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평가액 부 족	기타
합계	157,711,410	15,249,200	3,143,660	127,367,410	3,752,400	2,724,800	5,473,940
지방세 수입	128,127,410	6,505,450	3,143,660	115,279,560	0	2,724,800	473,940
세외 수입	29,584,000	8,743,750	0	12,087,850	3,752,400	0	5,000,000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787,406,370원 보다 629,694,960원이 감소한 157,711,410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15,249,200원, 무재산 127,367,410원 등이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의 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다음과 같이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46,656,916,636	646,656,916,636	0

##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2022	582,975,832,000	71,758,238,670	654,734,070,670	501,100,757,420
2021	500,303,000,000	69,552,693,710	569,855,693,710	458,122,486,130

구 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c-d-e-f)
	계 (e)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2	102,011,562,270 (2,390,000,000)	52,738,890,540 (2,390,000,000)	11,780,930,090	37,491,741,640	8,471,981,840	43,149,769,140
2021	71,758,238,670 (2,310,000,000)	36,241,444,980 (845,000,000)	5,334,443,730	30,182,349,960 (1,465,000,000)	6,363,020,530	33,611,948,380

※ ( )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고, 이월금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 ○ 세출결산 개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82,975,83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1,758,238,67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54,734,070,670원이며, 501,100,757,4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 2,390,000,000원을 포함한 102,011,562,270원, 보조금 반납액은 8,471,981,840원, 집행잔액은 43,149,769,140원이다.

### ○ 예산의 이월

2022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위와 같다. 검사결과 명시이월은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52,738,890,540원, 사고이월 사업은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등 11,780,930,090원으로서 각각 이월사업 집행이 적정하였다.

자금없는 이월은 국도비 미송금액으로서, 금과, 순창, 유등, 인계, 적성, 팔덕, 풍산 등 7개 읍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390,000,000원이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01,100,757,420	501,100,757,420	0

○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2개부서 3건 55,000,000원이며,
- 예산이체는 2개부서 64건 21,668,256,840원으로, 이는 주로 2022년 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예산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 채무부담행위

2022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 신규발생액은 없었다.

○ 예비비 사용

(단위 : 원)

회계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일반회계	25,368,407,000	1,496,658,000	1,213,444,160	61,257,500	221,956,340

예비비 예산액은 25,368,407,000원으로서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외 8건, 1,496,65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13,444,160원을 지출하고, 61,257,500원을 이월하였으며, 221,956,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다.

### (3) 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b>합 계</b>	<b>23,909,283</b>	<b>24,354,871</b>	<b>23,865,279</b>	<b>379</b>	<b>489,211</b>
<b>기타특별회계</b>	<b>23,909,283</b>	<b>24,354,871</b>	<b>23,865,279</b>	<b>379</b>	<b>489,211</b>
상수도사업	8,637,667	9,108,930	8,637,439	0	471,491
의료급여기금운영	597,679	607,668	594,825	0	12,843
새농촌육성기금	14,015,973	14,049,353	14,048,973	379	0
공공주택	657,964	588,918	584,041	0	4,876
<b>결산확인액</b>	<b>23,909,283</b>	<b>24,354,871</b>	<b>23,865,279</b>	<b>379</b>	<b>489,211</b>
<b>차 액</b>	<b>0</b>	<b>0</b>	<b>0</b>	<b>0</b>	<b>0</b>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23,865,279천원은 예산현액 23,909,283천원의 99.8%로서 44,004천원이 예산현액보다 미수납되었다.

특별회계 주요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 대비 471,491천원이 미수납 되었다.

####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b>23,865,279,596</b>	<b>23,865,279,596</b>	<b>0</b>

## 2) 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b>합 계</b>	<b>23,909,283,000</b>	<b>22,968,478,450</b>	<b>170,141,610</b>	<b>770,662,940</b>
<b>기타특별회계</b>	<b>23,909,283,000</b>	<b>22,968,478,450</b>	<b>170,141,610</b>	<b>770,662,940</b>
상수도사업	8,637,667,000	8,379,002,730	170,141,610	88,522,660
의료급여기금운영	597,679,000	562,195,810	0	35,483,190
새농촌육성기금	14,015,973,000	13,954,833,850	0	61,139,150
공공주택	657,964,000	72,446,060	0	585,517,940
<b>결산확인액</b>	<b>23,909,283,000</b>	<b>22,968,478,450</b>	<b>170,141,610</b>	<b>770,662,940</b>
<b>차 액</b>	<b>0</b>	<b>0</b>	<b>0</b>	<b>0</b>

#### ○ 세출결산 개요

예산현액은 23,909,28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0%에 해당하는 22,968,478,450원이며, 이월액은 170,141,610원으로 0.7%, 집행잔액은 770,662,940원으로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b>22,968,478,450</b>	<b>22,968,478,450</b>	<b>0</b>

#### ○ 이용·전용 및 이체

예산이용·전용·이체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예산의 이월

이월액은 170,141,610원으로 모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처리된 금액이었다.

### 3.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0,124,910,269	52,053,456,547	53,128,255,377	1,074,798,830	62,178,366,8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51,400,047,110	51,400,047,110	0	51,400,047,110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		495,444,580	3,468,120	3,468,120	0	498,912,700
인재육성기금		4,271,644,095	26,853,830	589,853,830	563,000,000	4,298,497,925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41,552,410	24,539,150	25,226,280	687,130	266,091,560
자활기금		1,148,611,642	-3,837,193	46,188,407	50,025,600	1,144,774,449
양성평등기금		528,476,170	-3,608,010	2,391,990	6,000,000	524,868,160
노인복지기금		522,936,954	2,367,890	2,367,890	0	525,304,844
옥외광고발전기금		0	642,161,420	758,668,960	116,507,540	642,161,420
식품진흥기금		105,944,185	473,010	473,010	0	106,417,195
중소기업육성기금		1,211,407,116	-65,399,780	5,567,610	70,967,390	1,146,007,336
투자진흥기금		617,196,030	2,790,540	2,790,540	0	619,986,570
재난관리기금		382,468,328	35,100,600	286,311,770	251,211,170	417,568,928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437,734,926	2,768,610	4,168,610	1,400,000	440,503,536
군민체육진흥기금		161,493,833	-14,268,750	731,250	15,000,000	147,225,083

2022회계연도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0,124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3,128백만원을 더하고, 1,074백만원을 공제한 62,178백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순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4. 재무제표의 결산

##### ○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2022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b>자 산</b>	2,222,045	2,067,389	154,656	50.0
I. 유 동 자 산	227,214	139,972	87,242	28.2
II. 투 자 자 산	11,923	9,930	1,993	0.6
III. 일 반 유 형 자 산	206,318	186,130	20,188	6.5
IV. 주 민 편 의 시 설	311,097	306,017	5,080	1.6
V. 사 회 기 반 시 설	1,462,803	1,422,083	40,720	13.1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691	3,256	△565	△0.1
<b>부 채</b>	15,459	13,691	1,768	0.5
I. 유 동 부 채	9,497	7,195	2,302	0.7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5,962	6,496	△534	△0.2
<b>순 자 산</b>	2,206,586	2,053,698	152,888	49.4
I. 고 정 순 자 산	1,982,515	1,917,347	65,168	21.0
II. 특 정 순 자 산	62,652	10,553	52,099	16.8
III. 일 반 순 자 산	161,419	125,798	35,621	11.5

순창군의 총자산은 2,222,045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5,459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206,586백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54,656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227,21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7,24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994,831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7,41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9,497백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비유동부채가 5,962백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3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768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9,497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30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5,962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3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I. 사업순원가	123,278	145,990	△22,712
II. 관리운영비	63,285	30,530	32,755
III. 비배분비용	27,465	22,046	5,419
IV. 비배분수익	5,862	9,567	△3,705
V.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	208,166	189,001	19,165
VI. 일반수익	351,399	265,390	86,009
VII. 재정운영결과 ( V - VI )	(143,234)	(76,390)	△66,844

2022회계연도 순창군의 사업순원가는 123,278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63,285백만원), 비배분비용(27,465백만원) 및 비배분수익(5,862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08,166백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51,399백만원을 차감한 2022 회계연도 (순창군)의 재정운영결과는 -143,234백만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73,046백만원, 운영비 102,713백만원, 정부간이전비용 3,572백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73,558백만원, 기타비용 38,913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38,644백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495,272백만원, 기타수익 1,119백만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391,80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3,44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535,036백만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38,64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56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495,27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9,63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지방교부세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143,23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6,84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비용의 증가보다 수익의 증가가 큰 것에 의한 것입니다.

## 5. 성과보고서 결산

순창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순창군은 본 회계연도의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 목표(22개)-정책사업목표(109개)-단위사업(21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순창군의 성과관리대상사업 결산액은 524,069,235,870원이며, 성과지표수 중 20개는 초과성적을 달성하였고, 98개는 달성, 44개는 미달성을 보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p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단위 사업	초과 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22	109	162	215	20	98	44	73%
기획예산실	1	6	12	9	1	6	5	58%
행정과	1	8	11	21	1	7	3	73%
주민복지과	1	7	10	25	1	6	3	70%
재무과	1	6	6	12	0	5	1	83%
문화관광과	1	6	7	10	1	4	2	71%
민원과	1	6	12	9	1	9	2	83%
경제교통과	1	6	8	11	2	4	2	75%
안전재난과	1	4	4	5	1	2	1	75%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단위 사업	초과 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건설과	1	4	5	4	0	2	3	40%
농촌개발과	1	4	8	6	2	5	1	88%
산림공원과	1	5	8	16	1	7	0	100%
환경수도과	1	5	5	19	0	5	0	100%
보건사업과	1	4	11	8	3	6	2	82%
의료지원과	1	4	6	6	0	4	2	67%
생명농업과	1	5	10	7	0	6	4	60%
농축산과	1	11	11	15	2	7	2	82%
농업기술과	1	3	12	5	1	6	5	58%
건강장수사업소	1	2	2	7	0	1	1	50%
장류사업소	1	4	4	7	0	2	2	50%
미생물산업사업소	1	4	4	6	1	2	1	75%
체육진흥사업소	1	4	4	5	2	1	1	75%
의회사무과	1	1	2	2	0	1	1	50%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권현재액

#### 채권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2,253,270	2,682,046	3,663,335	11,271,981
일반회계	2,297,255	717,915	771,176	2,243,994
특별회계	9,558,539	1,929,900	2,799,918	8,688,520
기금	397,475	34,231	92,240	339,466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271,981천원으로 확인되었다.

### (2) 채무현재액

검사결과 순창군 채무는 2014년부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공유재산현재액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793,991,456	154,644,880	7,786,202	1,940,850,133	
행정 재산	공용재산	232,566,671	34,800,361	2,408,422	264,958,609
	공공용재산	1,506,579,433	116,521,165	5,247,080	1,617,853,518
	기업용재산	31,516,817	9,500	0	31,526,317
	보존용재산	113,106	0	0	113,106
	소계	1,770,776,028	151,331,026	7,655,503	1,914,451,551
일반재산	23,215,427	3,313,854	130,699	26,398,581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46,858,677천원이 증가한 1,940,850,133천원이다. 주요 증가 내역은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건립, 월드푸드사이언스관 건립, 팔덕면 복지센터, 순화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내역은 토지개발사업(팔덕면 다용도보조경기장)에 따른 폐쇄, 섬진강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폐쇄, 토지이동(분할, 합병)사항 정리에 따른 감소 등이다.

### (4) 물품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986	107	33	1,060
금 액	9,650,954	749,790	904,189	9,496,555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수량이 74건이 증가한 1,060건 이었으나, 금액은 154,398천원이 감소한 9,496,555천원으로 확인되었다. 증가사유는 차량구입(미니버스, 전기차 등), 냉난방기 구입 등의 신규 취득이며, 감소사유는 차량매각(쓰레기수거용트럭, 덤프트럭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 Ⅲ. 결산검사 결과

2022회계연도  
**개선할 사항 및 우수사례**

# 1.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

연번	실과원소	제 목	페이지
1	기 획 예 산 실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22
2	기 획 예 산 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25
3	기 획 예 산 실 건 강 장 수 과 민 원 과 경 제 교 통 과	기금관리 활성화 미흡	26
4	주 민 복 지 과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 운영 관리 지도 철저	27
5	주 민 복 지 과 건 강 장 수 과 안 전 재 난 과 환 경 수 도 과 농 업 축 산 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29
6	재 무 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계수 오류 정상화	31
7	재 무 과 민 원 과 경 제 교 통 과 장류산업사업소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관리방안 강구	32
8	문 화 관 광 과	섬진강영화제 지원사업 예산집행 철저	33
9	농 촌 활 력 과	자금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34
10	보 건 사 업 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	35
11	보 건 사 업 과 의 료 지 원 과	의약품 관리 미흡	36

# 1

##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 현 황

부서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단위사업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2	107	109	161	162	207	215	20	98	44
기획예산실	1	6	6	12	12	9	9	1	6	5
행정과	1	8	8	11	11	<b>20</b>	<b>21</b>	1	7	3
주민복지과	1	7	7	10	10	25	25	1	6	3
재무과	1	6	6	6	6	12	12	0	5	1
문화관광과	1	6	6	7	7	10	10	1	4	2
민원과	1	6	6	12	12	9	9	1	9	2
경제교통과	1	6	6	8	8	<b>5</b>	<b>11</b>	2	4	2
안전재난과	1	4	4	4	4	5	5	1	2	1
건설과	1	4	4	5	5	4	4	0	2	3
농촌개발과	1	4	4	8	8	6	6	2	5	1
산림공원과	1	5	5	8	8	16	16	1	7	0
환경수도과	1	5	5	5	5	19	19	0	5	0
보건사업과	1	4	4	11	11	8	8	3	6	2
의료지원과	1	4	4	6	6	6	6	0	4	2
생명농업과	1	5	5	10	10	7	7	0	6	4
농축산과	1	11	11	11	11	15	15	2	7	2
농업기술과	1	3	3	12	12	5	5	1	6	5
건강장수사업소	1	2	2	2	2	7	7	0	1	1
장류사업소	1	<b>3</b>	<b>4</b>	4	4	<b>5</b>	<b>7</b>	0	2	2
미생물산업사업소	1	<b>3</b>	<b>4</b>	<b>3</b>	<b>4</b>	6	6	1	2	1
체육진흥사업소	1	4	4	4	4	5	5	2	1	1
의회사무과	1	1	1	2	2	<b>3</b>	<b>2</b>	0	1	1

##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개정( '14. 5월)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함에 따라, 순창군은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53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2항 및 제44조의2,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순창군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결산검사위원이 검토한 결과 미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성과계획서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된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2022회계연도 4번의 추경이 있었으나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책사업 목표의 개수, 지표수, 단위사업 성과지표는 22년도 성과 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해야 하나 성과보고서에 임의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개부서 :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의회사무과)
-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노력없이 성과달성 가능성이 높은 통상업무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6개부서 : 행정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환경수도과, 의료지원과)

-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목표치를 미달성한 성과지표와 130% 초과달성한 지표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사유를 명시해야 하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원인분석대상 : 64개 사업<초과달성 14개 부서, 미달성 20개 부서>)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산식을 설정해야 하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하게 설정하였습니다.

(6개부서 : 주민복지과, 민원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생명농업과)

## □ 개선[권고]사항

- 성과계획서에는 본예산 수립 이후 추경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 내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정책사업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시 측정산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 간에 연계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 내실있는 지표설정 및 관리로 전략목표에 대한 실적을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 2

#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 □ 순세계잉여금 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반납	순세계 잉여금
		세입	세출	잉여금	계	명시	사고	계속		
2022	678,643	670,522	524,069	146,453	99,792	50,519	11,781	37,492	8,501	38,160
2021	593,655	591,693	481,198	110,495	69,449	35,397	5,334	28,717	6,414	34,632
2020	549,789	548,684	450,645	98,039	67,651	36,393	13,975	17,283	6,146	24,242

### □ 문 제 점

- 3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2회계연도 총세입액 670,522백만원 중 총세출액 524,069백만원을 뺀 잉여금 146,453백만원에서 이월금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160백만원으로 산출됩니다.
- 2020년 24,242백만원, 2021년 34,632백만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에 38,160백만원으로 전년보다 9.3%가 증가한 것으로,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순창군이 그 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 현상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특히, 세출결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 불용처리 문제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이월은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소요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또한, 본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기금관리 활성화 미흡

#### □ 현 황

(단위 : 원)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0,124,910,269	52,053,456,547	53,128,255,377	1,074,798,830	62,178,366,8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51,400,047,110	51,400,047,110	0	51,400,047,110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		495,444,580	3,468,120	3,468,120	0	498,912,700
인재육성기금		4,271,644,095	26,853,830	589,853,830	563,000,000	4,298,497,925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41,552,410	24,539,150	25,226,280	687,130	266,091,560
자활기금		1,148,611,642	-3,837,193	46,188,407	50,025,600	1,144,774,449
양성평등기금		528,476,170	-3,608,010	2,391,990	6,000,000	524,868,160
노인복지기금		522,936,954	2,367,890	2,367,890	0	525,304,844
옥외광고발전기금		0	642,161,420	758,668,960	116,507,540	642,161,420
식품진흥기금		105,944,185	473,010	473,010	0	106,417,195
중소기업육성기금		1,211,407,116	-65,399,780	5,567,610	70,967,390	1,146,007,336
투자진흥기금		617,196,030	2,790,540	2,790,540	0	619,986,570
재난관리기금		382,468,328	35,100,600	286,311,770	251,211,170	417,568,928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437,734,926	2,768,610	4,168,610	1,400,000	440,503,536
국민체육진흥기금		161,493,833	-14,268,750	731,250	15,000,000	147,225,083

####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하여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집행실적이 있는 기금 또한 그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 개선[권고]사항

-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기금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유사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함

## 4

## 순창군 장애인 연합회 운영 관리 지도 철저

## □ 단체현황

- 단 체 명 : 순창군장애인연합회
- 대 표 자 : 최기순 (회원수 : 100명)
- 위 치 : 순창읍 순창5길 11-4(순창군노인장애인회관)
- 지원근거 : 순창군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시각,농아) 복지사업비, 연합회 운영비 및 사무장 인건비

## □ 2022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 계	68,075	55,290	12,785	
운 영 비	30,000	30,000	0	
복지사업비	38,075	25,290	12,785	

## □ 문 제 점

연번	사 업 명	지출일	지 출 (천 원)	지출내역	문제 사항	비고
계	8개 사업		33,709			
1	연합회 한글교실 강사	5~7월	2,860	13만*22회	강사비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미징수	참여인원 14명
2	점자, 한글수화 교실 야외테마 학습	10.5	200	차량지원비, 차량2대*10만	신용결재(휘발유) 버스 임대료가 없고휘발유 차량2대로 참여인원 수송 불가, 여행자 보험 미가입	참여인원 50명
3	장애극복 발표 및 송년식	12.15	180	상품권 1만원*20장	지급 수령대상자 명단 없음	
4	장애인인권 교육(2차)	12.23	360	교육대상자 선물(사각티슈 80개*4500원)	교육 대상자 및 수령자 명단 없음	참여인원 80명

연번	사 업 명	지출일	지 출 (천 원)	지출내역	문제 사항	비고
5	연합회운영비	12.23	50	사무용품(A4) 구입	카드영수증과 간이영수증 징구했지만 간이영수증 기록사항누락(품목,수량, 단가)	
6	연합회 힐링공예	12.27	1,500	폼지락힐링공예 강사비(재료비 포함) 5회	재료비와 강사비 구분 없음	참여 인원 13명

## □ 개선[권고]사항

- 행사추진으로 기념품 등 집행시 관련 사진, 지급 수령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교육 등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종 야유회, 선진지견학 등 야외 활동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책으로 앞으로 유사 활동시 여행자 단체(단기)보험 가입을 권해 드립니다.
- 아울러 회계처리의 건전성을 위해 단체의 정산완료 이전에 행정의 지도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회계문제점 개선조치 및 회계 연찬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5

##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 □ 현 황

○ 최근 3년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비고
2022	261,521,902	261,670,360	203,248,101	48,422,011	10,000,248	
2021	259,791,493	257,761,235	211,223,982	37,364,718	9,172,535	
2020	235,643,592	236,005,082	193,657,852	35,285,575	7,061,655	

○ 세부현황(2억원 이상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보조금 수령액 ①	집행잔액				
					합계 ②	국비	도비	군비	비율 ②/①
1	주 민 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99,563	324,029	115,023	17,254	191,752	29%
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86,866	291,111	145,556	29,111	116,444	33%
3		긴급복지지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373,298	405,387	168,673	101,204	135,510	30%
4	안 전 재난과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1,800,000	1,800,000	1,800,000	0	0	100%
5	환 경 수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	810,000	461,230	276,738	55,348	129,144	57%
6			민간자본사업	165,000	165,000	82,500	24,750	57,750	100%
7	농축산과	거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시설비	200,000	200,000	100,000	0	100,000	100%
8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6,100,000	247,565	247,565	0	0	1.5%
9	환 경 수도과	(명시이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 설 조성	시설비	397,120	251,681	0	190,121	61,560	63%
10	건강장수 사업소	(명시이월) 일반농산어촌개발(농 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	1,062,195	361,020	0	285,138	75,882	34%
11	안 전 재난과	(계속비이월)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3,674,694	3,639,971	830,971	0	2,809,000	10%
12	환 경 수도과	(계속비이월) 내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276,070	250,094	217,074	0	33,020	90%

## □ 문제점

- 국·도비 보조금이 순창군 총예산 현액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순창군은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해마다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보조금 반환금 또한 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세부내용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법적 지원보조금으로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 잔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 등은 사업추진 중에 사업내용 변경, 취소 등으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고, 또한 매칭부담한 군비 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 □ 개선(권고)사항

- 보조금 사업은 국가 등의 지원을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완하는 사업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사업 성과를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 그러기에 보조금을 선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6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계수 오류 정상화

### □ 현 황

(단위: 개수,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취득		당해처분		당해연도말 보유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변경전	933	9,522,045	89	526,082	33	904,190	989	9,143,937	
변경후	986	9,650,954	107	749,790	33	904,190	1,060	9,496,555	
차이	53	128,909	18	223,708	0	0	71	352,618	

### □ 문 제 점

- 물품의 취득 및 처분 등록시 수기 등록분 일부 누락과 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의 미숙으로 새올 물품관리 시스템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 개선(권고)사항

- 각 실과원소, 읍·면 물품의 취득 및 처분시 새올 물품관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품관리 매뉴얼 배포 및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시 물품 내역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제고 관리방안 강구

## □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부 과 액	수 납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민 원 과	1,073,508,760	722,800,960	0	350,707,800	67.3%
경제교통과	1,367,690,730	564,558,980	12,496,150	790,635,600	41.3%
장류사업소	796,308,580	518,444,430	0	277,864,150	65.1%

## □ 문 제 점

- 세외수입은 징수결정 후 납기일 이후 적기에 독촉이 필요하나 미납이 장기화 된다면 세외수입 추심 및 추징이 더 어렵게되어 결손액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세입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현재 세외수입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항목별로 징수결정 후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관리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납처분에 관하여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의 과부화로 징수율 제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 □ 개선[권고]사항

-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체계를 매뉴얼화하여 징수결정 후 초기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징수부서의 업무연찬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 미수납액(체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체납액 누증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대한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부서간 협업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제1회 섬진강영화제 현황

- 개최일시 : 2022. 10. 21 ~ 10. 23(3일간)
- 장 소 : 일품공원 및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일원
- 주요내용 : 개막식, 시네마토크, 홍보영화제작, 로케이션 사진전 등
- 사업단체 :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회
- 예산집행 내역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섬진강영화제 지원사업	150,000,000	149,830,900	169,100	이자 13,610

### □ 문 제 점

- 예산집행 과목 중 전문인력 수당이 44,440천원으로 인건비성 예산의 비중(약 30%)이 상당히 높고,
- 프로그램 운영물품 임차비와 초청게스트를 위한 다과비 성격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집행되어 순수한 영화제 행사에 사용되는 비율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 □ 개선[권고]사항

- 향후 섬진강 영화제 추진시 조직위원회의 영화관련 전문가 보강 및 분과 구성을 통해 위원들의 활동 폭을 넓혀 집행위원장 등 전문인력 수당을 절감하고, 인건비성 예산 집행을 자제하여 핵심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길 바랍니다.
- 또한, 사업 진행시 불필요한 물품 임차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품 대여 및 구입시 2개 이상 업체를 비교하여 저렴한 업체로 계약하는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 9

## 자금없는 이월 최소화 노력

## □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다음연도 이월액				자금없는 이월액	비고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2	99,791,703 (2,390,000)	50,519,032 (2,390,000)	11,780,930	37,491,741	2,390,000	
2021	69,448,238 (2,310,000)	35,396,445 (845,000)	5,334,443	28,717,350 (1,465,000)	2,310,000	
2020	67,651,260 (2,041,573)	36,393,010 (1,946,545)	13,975,112 (95,028)	17,283,138	2,041,573	

※ 2022년 자금없는 이월액 발생은 농촌개발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 사업)임

## □ 문 제 점

- 이월사업비는 자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월이 가능하지만,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처리는 불가(국가에서 자금이전이 확실시되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최근 3년간 자금없는 이월액을 비교한 결과 2019년보다 2020년이 2,041,573천원이 더 발생하였고, 2021년은 2020년보다 268,472천원이, 2022년은 2021년보다 80,000천원이 더 발생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된다고 보여집니다.

## □ 개선[권고]사항

-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관련기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 □ 현 황

- 22년도 예산 : 107백만원
  - 인건비 : 101백만원
  - 기 타 : 6백만원(운영물품 구입)
- 사용료 수입 : 63백만원(예산대비 59 %)
- 담당직원 : 2명(장례지도사-기간제근로자)

## □ 문 제 점

-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하고, 장례용품, 음식 등은 자격을 갖춘 자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가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장례용품은 가격고시 없이 관내업체 1개소와 전주소재 업체 1개소가 순번제로 납품하였고, 떡 또한 관내 10개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현황을 벽면에 게시하나, 가격표시 없이 사용자(상주)가 선택토록 하여, 순창군에서 특정업체 유도 및 차별을 한다는 관련업종 종사자로부터 오해와 불만여론이 있었습니다.

## □ 개선[권고]사항

- 장례식에서 장례용품 및 떡 등 관례적으로 필요한 주류, 다과 등 음식은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가격을 고지할 필요가 있고,
- 장례식장 설치목적인 운영일지, 장례용품 고시대상 품목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운영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담긴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 □ 현 황

-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의약품 관리는 「의약품 관리법」, 「약사법」 규정에 따라 전산화하여 국가 사회정보원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의약품 관리현황

## 구입 및 지출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부 서 명	구입방법			예산 및 지출		
	계	수의	입찰	본예산	최종예산	지출액
계	25	1	24	304	270	253
보건사업과	7	1	6	197	163	163
의료지원과	18		18	107	107	90

## 폐기 및 전배내역

(단위 : 건, 개)

부 서 명	폐기내역		전배 건수	비 고
	건수	수량		
계	6	15,804	45	
보건사업과	4	12,699	44	
의료지원과	2	3,105	1	

- 또한, 의약품 관리의 기준은 구입, 사용(투약) 잔량을 기준으로 의약품 수불부에 의하여 구입, 시스템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 문 제 점

- 2022년도 의약품 구입은 보건지소(10개소), 보건진료소(17개소)의 구입요구서로, 보건의료원 내 소요량은 응급실 등 6개 진료과의 수요량을 취합하여 보건사업과에서 일괄 단가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 □ 개선[권고]사항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투약, 처방 의약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매월말 의약품 보유현황 보고서에 의해 임박의약품(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은 각 지소, 진료소에 과부족 의약품을 파악하여 전배 또는 교환조치하고,
- 또한, 보건의료원에서는 결산승인 전 시스템의 의약품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임박의약품의 관리 및 수불부 기록에 철저를 기하고,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약품 관리자가 과부족 의약품을 파악, 구입·전배·교환해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폐기되는 의약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21~2022년 월별 의약품 수불은 익년도 예산편성과 차후 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피드백 자료로서, 2023년부터는 의약품 구입계획을 수립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2. 우수 사례

연번	실과원소	제 목	페이지
1	주민복지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39
2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창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40
3	안전재난과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편입토지 매입	41
4	농촌활력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43
5	농업축산과	<농업인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농산물 생산장려금 한시적 지원	44

##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 □ 목 적

- 맞벌이 부부 등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취학아동 (3~6세) 돌봄공간 운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0. ~ 12.(3개월)
- 예 산 액 : 439백만원(소멸기금124, 군비33, 명시이월 282백만원)
- 사업내용 :
  - 위 치 :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2층 (297㎡)
  - 주요내용 : 미취학아동(만3~6세) 30명 돌봄 운영
  - 주요시설 : 보육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사무실 등
  - 운영시간 : (평일) 16시~21시, (토요일) 09시~18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 종 사 자 : 기간제근로자 4명(센터장1, 보육교사2, 조리사1)

### □ 추진상황

- (2022. 4. ~ 8.) 리모델링 공사(조성비 333백만원)
- (2022. 9.)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교부 및 3회 추경예산 반영
- (2022. 10.)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 및 시설 개관 준비
- (2022. 11.) 아이돌봄센터 원아 모집 및 운영 개시

### □ 추진성과

-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받아 안전매트 및 계단 난간 등 시설 보강
- 부모 근무시간 동안 돌봄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 정착 기여
- 체육, 원어민 언어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질 향상

### □ 목 적

-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조기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0. ~ 12.(3개월)
- 예 산 액 : 2,000백만원
- 추진대상 : 순창군에 주소등록을 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00대 생활업종)
- 지 원 액 : 개소당 2백만원

### □ 추진상황

-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18개 업종 597업체) 지원
- 코로나 19 이후 매출감소 업체 지원
- 장류업체, 떡집, 건강원 등 제조업 유사업종 지원
  -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 소상공인 총 752개소, 2,466백만원 손실보전액 지원

### □ 추진성과

- 타시군에 없는 순창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관내 자영업자 보호 및 육성
- 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코로나 19 물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3

##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편입토지 매입

### □ 목 적

- 군청(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내 미협의 토지인 빈집에 대하여 본 사업의 우수저류조 유입관로를 편입시켜 토지매입 후 주차공간 확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코자 매입 추진

순창군청 뒤편 주차장 확장시부터 각 부서에서 수없이 매입을 추진하였지만 빈집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주 자녀들의 빈집 매각 불가 입장 완곡

### □ 토지매입 현황

- 위 치 : 순창읍 순화리 390번지
- 소유주 : 이정상 외 2명(거주지 :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천, 경기도 고양)
- 매입비 : 250,127천원
  - 토지보상(390m<sup>2</sup>) 202,895천원, 지장물(건물 52.9m<sup>2</sup>) 등 47,232천원

### <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 위치 : 순창읍 경천로 33 일원(군청 주차장)
- 사업내용 : 우수저류조 V=10,300m<sup>3</sup>, 배수펌프 1식, 관로정비 425m
- 총사업비 : 9,800백만원(국 4,900, 도 1,470, 군 3,430)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 추진상황

- (2022. 2. ~ 9.) 편입토지 협의를 위한 토지주 유선 협의 및 방문(6회)
- (2022. 7.)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022. 8. ~ 10.)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문 발송(2회)
- (2022. 10.)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 추진성과

- 군청 내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제2청사 건립으로 사무공간 확보 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군청 출입구의 빈집 철거로 환경개선 등

### <결산검사위원 의견>

- ▶ 순창읍 순화리 390번지의 주택 매입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주차장 확장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매입하려 해도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중이 하나였음
- ▶ 주택소유주의 자녀들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매각가액의 입장차로 수년간 매각 불가 입장 표명
- ▶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주택 매입 협상을 마무리하였던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팀장 및 주무관)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순창군 또는 순창군의회에서 충분한 포상이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 4

##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 목 적

-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관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 □ 사업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개요
계	3개사업	41,000	
1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2022 ~ 2024.</li> <li>•위치: 동계면 현포리 630-1번지 일원</li> <li>•내용 : 공공임대주택 15세대 건립</li> </ul>
2	북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2023 ~ 2024.</li> <li>•위치: 북흥면 정산리 319-7번지일원</li> <li>•내용 : 공공임대주택 15세대 건립</li> </ul>
3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3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2023 ~ 2028.</li> <li>•위치: 순창읍 순화리 743번지 일원</li> <li>•내용 : 고령자 복지주택 100세대, 복지시설 1,000m<sup>2</sup> 건립</li> </ul>

※ 기 2개 행복주택 건립완료 : 순창읍 행복주택(15세대), 금과면 행복주택(15세대)

## □ 추진상황

- (2021. 10. ~ 11.) 동계면, 북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사업확정
- (2022. 2. ~ 3.) 동계면, 북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 추진
- (2022. 12.)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공모 선정

## □ 추진성과

- 면 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여건 개선
-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서비스 제공

## <농업인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농산물 생산장려금 한시적 지원

### □ 목 적

-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

### □ 근거법령

-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 사업실적

- 사업명 : 농산물 생산장려금 한시적 지원사업
- 사업비 : 1,290,000천원(군비 100%)
- 사업량 : 6,450농가
- 지급기준 : 200천원/농가
- 지급대상 :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관내에 거주(실거주)하며 관내 및 연접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 연접시·군(정읍, 남원, 임실, 곡성, 담양, 장성)
  - ※ 지급제외 대상 : 사망자, 동일 주소지 중복 수령 농가

### □ 추진상황

- '22. 12. 22. 농산물 생산장려금(한시적 지원) 지급 6,450농가, 1,290,000천원

### □ 추진성과

-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유가·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 및 벼 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에 기여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순창군의회